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88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4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함)에 걸친 사업의 경우 사업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제2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 ----- ----- ----- ----- ----- ----- . 이 경우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해당 <u>사업장</u>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략)	<u>근로자대표 및 사업주를 포함하여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사업</u>-----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¹⁾ 산업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사업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이 같은 사업으로서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대기업 등의 경우 본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사업대표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용자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 부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업주가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결정되는 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까지 더해져 중층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안전 보건관리에 있어 일관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효율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는데,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별 외부 작업환경이나 공정·설비 등에 따라 위험수준이 상이하여 사업 전체의 일관성보다는 사업장별 각각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필수적인 절차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결성된 회의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현행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일정 요건하에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면, 현행법 제24조제2항제4호의 “사업장”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24조제2항제4호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²⁾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노사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기본 단위를

2) 해당 “사업”의 ⇨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의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각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면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심의·의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현행 제도에서도 사업장 단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노사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보다는 각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